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77
----------	-----

2021. 3. 17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3. 5. 이재민 의원 등 11명

나. 상정의결

-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3. 17.)  
“ 수정가결 ”

## 2. 제안이유( 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이재민 의원 )

-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오늘날 핵가족화,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올바른 부모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. 또한 부모 역할의 부재 및 축소가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바,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정립하고 모든 구민이 가정에서 원활히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부모교육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
나.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다. 부모교육 실시 및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부모교육 위탁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# 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논의 필요
- 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#### 5. 검토보고 요지( 전문위원 : 이상원 )

- 본 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(의안의 발의)에 따라 이재민 의원 등 8명으로부터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임
- 안 제2조(정의)에서 “부모교육”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하였음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
- 안 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는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포함할 사항을 각 호별로 규정한 바, 각 호 별 상세 설명이 요구됨. 아울러 제6호에 ‘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’을 규정한 바, 부모교육 관련 그간 운영 현황 및 내용(예산편성현황, 사업추진 현황 등) 및 향후 소요 예산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
- 안 제6조(부모교육의 실시)는 부모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의 방법과 함께 교육 사항에 대해 각 호로 규정하여 부모교육의 실효성을

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각 호의 내용 설명이 요구됨

- 안 제7조(부모교육의 대상), 안 제8조(부모교육의 위탁) 및 안 제9조(재정지원)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에는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, 관련 기관, 법인·단체 등 현황, 위탁효과 및 소요예산 등 설명이 필요함.
- 안 제10조(협력 체계의 구축)에는 구청장이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
- 이에, 본 조례 제정은 해마다 해체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바, 건강한 가정 형성에 가장 중요한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
또한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1), 「평생교육법」 2), 「교육기본법」 3) 등의 ‘지방자치단체의 책임’, ‘다른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 현황’<sup>4)</sup> 등을 비추어 보면 제정의 의의도 있다고 사료됨.

다만,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, 보육지원과, 여성가족과 등 복지생활국과 교육지원과에서 산재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,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,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

---

1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 
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
1. 결혼준비교육 2. 부모교육 3. 가족윤리교육 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
2)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3)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  
제5조(교육의 자주성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4) 조례제정현황(2021년 3월 현재) : 서울특별시, 노원구, 도봉구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 의 : 안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부모교육의 대상이 모든 구민으로 보이며, 안 제7조에 정의되어 있는 부모교육의 대상은 ‘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’으로 부모교육의 대상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
- 답 변 : 부모교육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의 대상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
  
- 질 의 : 복지생활국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
- 답 변 : 작년 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9개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, 총 이용인원은 3,562명 정도임
  
- 질 의 :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상위법인 「건강가정기본법」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아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보육지원과가 맞는 것인지
- 답 변 :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현재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, 본 위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육지원과가 아닌 여성가족과로 이관하여 향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게 맞다고 생각함

## 7. 토론 요지

- 토론과정 중, 김세준 의원으로부터 부모교육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, 부모교육 실시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 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부.